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24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4. 6.

서울특별시의회
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

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
최근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한

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인해 남녀노소

모든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,

주요 대상 및 동기의 불특정에 따라

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.

□ 이와 관련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

피해자 발생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,

관련 유관기관 및 부서 간 정보교류 협력 등

협력체계 조항을 신설하여, 정보교류와 협력 등에 대한

실질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- 이에 안 제6조의 경우,  
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에 대한  
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의  
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 
구축 및 정보교류·협력 등을 강화하고자  
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 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  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 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 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